



제평위, 검색제휴 해지 기준 강화

제3자 전송, 유사언론행위 처벌 기준 보완 필요

이용자에 불편함을 주는 광고 제재키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포털상에서의 기사 어뷰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 3월 3일 제평위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 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제평위는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중·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업터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별점 부과 방식도 개선한다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이란 실시간검색어 등을 넣어 단순 클릭을 유도하거나 특정 기업의 광고성 키워드를 기사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어뷰징 행위를 말한다. 비율 기반 별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평위는 비율 별점 기준을 기존 1%에서 0.5%로 변경하

고, 비율 별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별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별점 1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도 추가,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개정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됐다.

포털 기사 매개로 부당 이익 추구한

2개 매체 제휴 해지

한편, 제평위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 제휴 해지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신고된 언론사 중 두 곳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6조 3항에 따라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한 기업 홍보담당자는 "어뷰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제평위의 최근 행보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번 심사 규정 개정에 '제3자 전송행위' 등 다른 어뷰징 행위에 대한 규정 보완이 빠져있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많은 매체들이 유사언론행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당 매체들은 별탈 없이 포털과의 제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제평위가 매체평가에 유사언론행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K A**

유재형 yoojh1999@kaa.or.kr